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재다71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참 조 조 문

[1] 민사소송법 제41조 제5호, 제45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5. 4. 14 자 2004재다719 결정

대법원 2004. 10. 27 자 2004재다382 결정

전 문

【원고, 재심피고】 송AA

【원고보조참가인】 박BA

【피고, 재심원고】 이CA외 1인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재다382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법관에 대한 제척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1조 제5호에서 말하는 '이전심급의 재판'이라 함은 그 불복사건의 하급심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급심의 재판이 부당하다 하여 불복상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복을 가리는 상소심재판에 하급심재판 때 관여한 법관이 다시 관여하는 것을 막자는 데에 있으므로, 재심사건에서 재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원재판은 위 '이전심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원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다시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9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재심대상이던 대법원 2003재다552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이 다시 이 사건 재심대상인 대법원 2004재다382 사건의 판결에 관여하였다는 것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9호의 재심사유, 즉 증인 등의 위증, 판결의 기초된 행정처분의 다른 행정처분에 의한 변경, 판단유탈 등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 제출의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그들의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들이 들고 있는 사유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의한 재심사유가 아니라, 맨 처음의 하급심판결(서울고등법원 84나489 판결, 인천지방법원 81가합1443 판결)에 사실오인, 법령위반,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이 있었는데도 맨 처음의 상고심판결이 이를 가려내지 않은 채 상고기각 판결을 한 것과 그 후 이를 비난하는 피고들의 일련의 재심청구를 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계속하여 탓하고 있는 취지에 불과하며,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법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